의안번호	제725호
의 결 연 월 일	2024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박병천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4년 10월 2일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병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25

발의연월일 : 2024년 10월 2일
발 의 자 : 박병천·이정범·유상용
김성대·김정일·박봉순
박진희 의원

1. 제안 이유

○ 다문화가족 학생의 지속적 증가로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지원과 다문화 학생의 강점 개발을 위한 교육 지원 체계 다양화가 요구됨에 따라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다문화교육 정의에 “다문화가족 학생의 부 또는 모의 언어 및 문화이해 교육” 추가 신설 (안 제2조제2항제4호)

나.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사업에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이중언어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추가 신설 (안 제10조제2항제7~8호)

다. 업무의 위탁에 “지역 대학” 추가 신설 (안 제11조)

라.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지정·운영에 “이중언어 교육 중점학교” 추가 신설 (안 제13조제2항제3호)

바.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 역량강화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신설 (안 제13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비용추계: 붙임

다. 관계부서 협의: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항을 대상으로 부 또는 모의 언어 및 문화이해 등의 교육

제3조의2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한국어와 다문화가족 학생 부 또는 모의 언어(이하 “이중언어”라 한다)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제10조제2항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8. 이중언어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제11조 중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법인·단체 및 지역대학”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초·중등”을 “초·중·고”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이중언어 교육 중점학교 초·중·고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연수)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생 략)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조례에서 “다문화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미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1항을 대상으로 부 또는 모의 언어 및 문화이해 등의 교육
제3조의2(사업)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3조의2(사업)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한국어와 다문화가족 학생 부 또는 모의 언어(이하 “이중언어”라 한다)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10조(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 등) ① (생 략)	제10조(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 개

	발・운영
<신 설>	8. 이중언어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7. (생 략)	9. (현행 제7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업무의 위탁) 교육감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문화가족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위탁) ---------- ---------- ---------- ---------- ---------- 법인・단체 및 지역대학---------- ----------.
제13조(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지정・운영) ① (생 략)	제13조(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지정・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유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②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초・중 등	2. ---------- 초・중・고
<신 설>	3. 이중언어 교육 중점학교 초・중・고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2(연수)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약칭: 다문화가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아동·청소년에 대한 학습 및 생활지도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의 배우자 및 가족구성원이 결혼이민자등의 출신 국가 및 문화 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거주지 및 가정환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결혼이민자등과 배우자 및 그 가족구성원이 없도록 방문교육이나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지원하고, 교재와 강사 등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방문교육의 비용을 결혼이민자등의 가구 소득수준, 교육의 종류 등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차등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비용 지원의 신청, 금융정보 등의 제공, 조사·질문 등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결혼이민자등의 배우자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결혼이민자등이 한국어교육 등 사회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아동·청소년 보육·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

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구성원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대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준용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와 제2항의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영주권자의 처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이하 “영주권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체류 또는 대한민국 안에서의 경제활동 등을 보장할 수 있다.

② 제12조제1항은 영주권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4조(난민의 처우) ①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가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재한외국인이 외국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에는 출국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상담과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1. 사업 개요

○ 다문화가족 학생 부 또는 모의 언어(이중언어) 및 문화이해 등의 교육 지원

2. 비용 발생 요인

○ 매년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인건비발생

3. 관련 조문

○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 제10조제2항제7호 및 제8호)

제10조(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7.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8. 이중언어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4.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 물가상승률은 고려하지 않음.

○ 산출내역의 단가는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 및 기준의 운영비·자산취득비의 기준단가로 하며 다문화가족 학생 부 또는 모의 언어(이중언어)및 문화이해 등의 교육 지원을 위한 강사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추계함

※ 향후 이중언어 프로그램 운영 수는 증·감될 수 있음

나. 추계 결과

○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안이 시행될 경우 2025년 600,000천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3,200,0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 연도별 비용 추가 소요 예산 〉

(단위 : 천원)

사업명	합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다문화가족 학생 대상 이중언어 교육 지원	2,690,000	530,000	530,000	530,000	550,000	550,000
이중언어교육 중점학교 초·중·고	510,000	70,000	100,000	100,000	120,000	120,000

다. 추계비용의 상세 내역

○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수행사업 (안 제10조제4호 및 제5호)

1) 다문화가족 학생 대상 이중언어 교육지원(다문화 맞춤형 강사 지원, 충북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운영 등) 맞춤형 강사 지원

- 소요예산(안): 2,690,000천원 ('28년 이후 550,000천원)

· 인 건 비 525,000천원(단위학교 대상 다문화맞춤형 강사비 지원) ※ 1교당 15000천원×35교 [강사비 단가: 시간당 30,000원]
· 운 영 비 5,000천원 (충북이중언어말하기 대회 운영비)
· 추가예산 20,000천원 (2028년 이후 이중언어교육지원 운영 비용)

2) 이중언어교육 중점학교 초·중·고(모든학생 대상 이중언어 학습교육, 교원·학부모 대상 이중언어 및 다문화인식개선 교육 등)

- 소요예산(안): 70,000천원

· 운영비 70,000천원(단위학교 이중언어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 1교당 7,000천원×10교